

# 일본에 대한 대륙붕한계위원회 권고의 비판적 검토

- 오키노토리시마에 대한 판단을 중심으로 -  
최지현\*

A Critical Analysis on the CLCS Recommendation on the  
Submission made by Japan and its Comments  
- Focusing on the evaluation on the Okinotorishima -

Jee-Hyun Choi

〈目 次〉	
국문초록	IV. 권고문에 대한 일본의 입장 분석
Abstract	및 평가
I. 서론	V. 결론
II. 사건경과	참고문헌
III. 대륙붕한계위원회 권고문 검토	

## 국문초록

2012년 대륙붕한계위원회는 일본의 대륙붕 연장 신청에 대해서 권고를 내렸다. 일본은 7개 지역에 대해서 대륙붕 연장을 신청하였는데, 이 중에서 1개 지역에서는 연장 신청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4개 지역에서는 연장신청을 받아들이는 내용의 권고가, 2개 지역에 대해서는 연장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권고가 내려졌다. 연장 신청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은 큐슈-팔라우해령(KPR) 해역으로 이 지역은 오키노토리시마를 기점으로 대륙붕한계 확장 신청이 이루어진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키노토리시마에 관한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 법학박사

대륙붕한계위원회의 판단에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대륙붕한계위원회가 시코쿠해분(SKB) 해역의 심사에 있어서는 오키노도리시마를 기점으로 200해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동심원 형태의 대륙붕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전제에서 심사를 진행한 것이다. 시코쿠해분 해역의 연장 신청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 대륙붕한계위원회는 이 해역에서 몇몇의 '60해리 고정점'이 오키노도리시마 기점 200해리 이내 대륙붕 위에 존재한다는 이유로 권고문에 그 좌표점을 확정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 때문에 오키노도리시마를 기점으로 한 200해리 대륙붕의 존재를 대륙붕한계위원회가 사실상 승인해준 것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으며 일본 외교부도 이러한 견지에서 오키노도리시마를 기점으로 한 대륙붕이 인정받았다는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추론된다. 하지만 대륙붕한계위원회가 200해리 대륙붕의 존재를 전제로 심사한 것은 위원회의 직무상의 한계에 기인한 것이지 오키노도리시마가 200해리 대륙붕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대륙붕한계위원회의 임무는 어떠한 섬이 200해리 대륙붕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200해리 밖의 대륙붕 '연장' 신청이 유엔해양법협약에 합치하여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하고 이에 대한 권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명시적으로 대륙붕한계위원회가 오키노도리시마를 기점으로 한 큐슈-팔라우해령에 대한 일본의 대륙붕 연장 신청에 대해서 오키노도리시마가 200해리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한국과 중국의 외교서한을 제시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권고를 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실도 이러한 입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 Abstract

In 2012, the Commission on the Limits on the Continental Shelf(CLCS) recommended on the submission of Japan. The CLCS recommend 4 regions as having the extension of the Continental Shelf and recommend 2 regions as not having the extension of the Continental Shelf. And the last region, Kyushu-Palau Ridge Regions(KPR) out of 7 regions submitted by Japan was not considered through the procedures of the CLCS. The KPR region is the regions measured with the 200 NM length of the radius from the

Okinotorishima as a base point. The CLCS did not consider the extension of the Continental Shelf of the KPR regions. But in considering the ShikokuBasin(SKB) region, the CLCS gave the recommendation on the premise of the existence of the KPR's 200 NM continental shelf from the base point of Okinotorishima. Since the 60 NM Formula Points exist inside the 200 NM Continental Shelf of the KPR region, the CLCS did not confirm the coordinate points of the 60 NM Formula Points in giving the decisions regarding to the SKB region. But this fact must not be accepted as the meaning that Okinotorishima is an island which can have the EEZ and the continental shelf according to the Article 121 of the UNCLOS. First of all, the CLCS is not the international body, which can decide whether an island can have its own the EEZ and the Continental Shelf. Function of the CLCS is to give technical and instructive recommendation about the application which contains the information of a coastal State's outer continental shelf. And the Recommendation of the CLCS certainly commented that the KPR regions could not be considered because of the note verbales from Korea and China which indicated that Okinontorishima is an island which cannot have the EEZ and the Continental Shelf.

## I. 서론

대륙붕한계위원회는 2012년 4월 19일 일본이 제출한 대륙붕 한계 확장과 관련된 정보문서에 대해서 권고를 내렸다. 대륙붕한계위원회는 권고문 원본을 공개하지는 않지만, 권고문 요약본은 위원회 웹사이트에서 공개하고 있다.<sup>1)</sup> 일본이 제출한 연장 신청에 대한 권고문 요약본은 2012년 6월 3일 대륙붕한계위원회 웹사이트를 통하여 공개되었다. 이 권고문에는 한-중-일 초미의 관심사인 오키노토리시마에 대해서 일본이 신청한 대륙붕 연장 신청을 대륙붕한계위원회가 인정해 준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담겨있다.

1) 유엔해양법국(UN, Division for Ocean Affairs and the Law of the Sea) 관련 홈페이지, [http://www.un.org/Depts/los/clcs\\_new/commission\\_submissions.htm](http://www.un.org/Depts/los/clcs_new/commission_submissions.htm) 참고.

이와 별도로 일본 외무성은 권고를 내린 직후, 그리고 권고문 요약본이 공개되기 이전인 2012년 4월 28일 외교 성명을 통하여 이번 대륙붕한계위원회 권고에 포함된 오키노도리시마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다소 모순된 논평을 내어 놓았다. 즉 일본 외무성은 ‘오키노도리시마’를 기점으로 동심원 형태로 형성된 200해리 대륙붕의 남쪽 큐슈-팔라우해령 남부해역에서 대륙붕한계위원회의 권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시코쿠해분 해역에 대해서 ‘오키노도리시마’를 기점으로 한 일본의 대륙붕 연장이 인정받고 있다는 점을 평가한다고 논평한 것이다.<sup>2)</sup> 오키노도리시마가 대륙붕을 가지는 섬인지와 관련하여 한쪽 해역에서는 대륙붕 한계 확장이 인정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쪽 해역에 대해서는 대륙붕 한계 확장이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을 확인하는 상호 모순된 평가 및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 외무성의 주장은 실제로 오키노도리시마에 대해서 대륙붕한계위원회가 어떠한 판단을 하였는지, 그 권고문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일본의 주장대로 오키노도리시마가 대륙붕 한계 확장의 기점으로 사용된 것인지에 대해서 권고문 요약본의 내용을 토대로 검토한다. 이외에 오키노도리시마를 기점으로 한 대륙붕 한계 확장이 인정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오키노도리시마가 자체 200해리 대륙붕을 갖는다는 전제에서 대륙붕한계위원회 심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를 시코쿠해분 해역에서의 대륙붕 한계 확장에 관한 대륙붕한계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토대로 검토한다. 오키노도리시마가 200해리 대륙붕을 갖는다는 전제에서 심사가 이루어졌다면 그것이 오키노도리시마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인지도 살펴본다.

## II. 사건경과

### 1. 대륙붕 연장 신청과 오키노도리시마

오키노도리시마는 북위 20도 25분 31초, 동경 136도 4분 11초, 필리핀해 큐슈-팔라우 해령에 자리 잡고 있는 오키노도리시마(Okinotorishima)는 일본의 최남단에 위치한 산호섬이다. 동서로 약 4.5km 남북으로 약 1.8km의 타원형 형태

---

2)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이지만 수면 아래 잠겨 있다. 만조 시에도 수면 밖으로 노출되는 두 개의 암석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히가시코지마(Higashikojima) 다른 하나는 기타코지마(Kitakojima)라고 부른다. 만조 시 히가시코지마의 크기가 트윈 침대 정도이고 높이는 해수면 위 약 6cm 정도이다. 기타코지마는 스몰 침대 정도의 크기에 높이가 히가시코지마의 약 2배이다.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제1항에 따르면 섬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이고 만조 시 수면 위에 노출되어 있다. 인간의 거주가 불가능하고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없으면 단순한 ‘암석’이 되어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 ‘거주가능성’, ‘경제활동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의미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빌미로 일본은 오키노도리시마를 섬이라 주장하고 있다. 산호섬이므로 태풍 등 자연적인 침식의 위험성이 있어 1987년부터 일본 정부는 이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원형 보호시설을 구축해 왔다.

해양정책연구재단이 중심이 되어 2005년부터 오키노도리시마 재건에 대한 계획을 세웠으며, 2006년에는 일본 어업국이 중심이 되어 산호초 복원사업을 시작하였고, 2007년에는 해상보안청이 중심이 되어 등대를 건설하였다. 일본의 국토교통성 백서는 광대한 배타적경제수역의 기선으로 오키노도리시마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2008년 11월 일본은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자국의 대륙붕 한계 확장을 신청하였으며, 신청서에는 오키노도리시마를 기점으로 한 대륙붕 한계 확장 신청도 포함되어 있다.<sup>3)</sup>

## 2. 오키노도리시마와 대륙붕한계위원회 권고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에 따르면 연안국은 기본적으로 200해리 폭의 대륙붕을 가질 수 있으며, 200해리 밖으로 대륙붕의 한계를 확장하고자 할 경우 대륙붕한계위원회에 그 한계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고 위원회의 권고를 얻을 것을 명하고 있다. 대륙붕한계위원회는 지질학, 지구물리학, 수리학 분야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되어있다. 대륙붕한계위원회는 연안국이 제출하는 대륙붕 한계에 관한 정보자료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연안국의 대륙붕이 협약 제76조에 따라서 200해리 이상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를 과학적·기술적으로 검토하고 판단

3) CLCS, Summary of Recommendation of the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in regard to the Submission made by Japan on 12 November 2008.

하는 기관이다. 대륙붕한계위원회가 연안국이 제출한 대륙붕 연장 신청에 관한 정보자료를 검토하고 이에 대해서 권고를 내린 후에, 연안국이 그 권고를 토대로 대륙붕 외측 한계를 확정하면 대륙붕의 외측 한계는 최종적인 구속력을 얻는다. 대륙붕한계위원회는 과학·기술 부분에서 조언 및 검토를 하는 기관이므로 유엔해양법협약 해석의 유권적 권한을 갖지 못한다. 즉, 오키노토리시마가 대륙붕이나 배타적경제수역을 갖는 섬인지와 관련하여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를 해석할 유권적 권한을 대륙붕한계위원회가 갖고 있지 못한 것이다.

<그림 1> 일본이 대륙붕 한계 확장을 신청한 7개의 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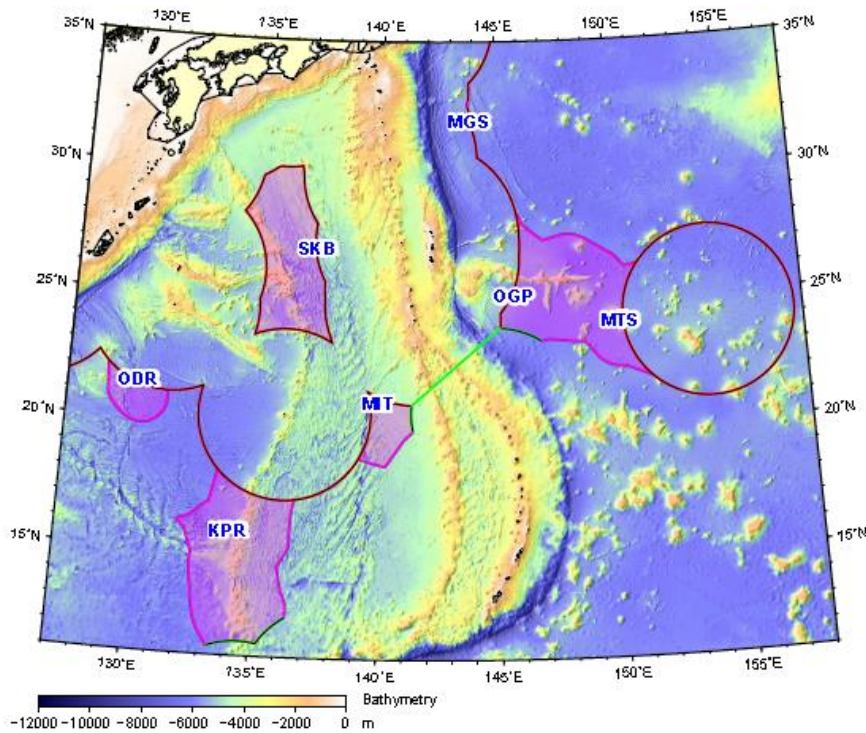


Figure 1.1. Areas of Japan's extended continental shelf

출처 : 일본에 대한 대륙붕한계위원회 권고문 요약본<sup>4)</sup>, 34쪽

일본은 2008년 11월 12일 대륙붕한계위원회에 대륙붕 한계 확장에 관한 정

4) *Ibid.*, p. 34.

보를 담은 문서를 제출하였다. 일본이 제출한 대륙붕한계 확장 신청 해역은 7개 해역으로 i) 큐슈-팔라우해령(KPR), ii) 미나미로토섬(MIT), iii) 미나미토리시마섬(MTS), iv) 모기해산(MGS), v) 오가사와라대지(OGP), vi) 남부 오키다이트해령(ODR), vii) 시코쿠해분(SKB) 해역이다. 이 중에서 오키노도리시마와 관련 된 것은 i) 큐슈-팔라우해령(KPR) 해역과 vii) 시코쿠해분(SKB) 해역이다. i) 큐슈-팔라우해령(KPR) 해역은 오키노도리시마를 기점으로 남쪽으로 대륙붕 한계 확장을 신청한 해역이며, vii) 시코쿠해분(SKB) 해역 역시 오키노도리시마를 기점으로 북쪽으로 대륙붕 한계 확장을 신청한 해역이다.

일본이 2008년 제출한 문서에 대해서 2009년 2월 6일에는 중국이, 2009년 2월 27일에는 한국이 오키노도리시마가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상의 자체 대륙붕 및 배타적경제수역을 가질 수 있는 섬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외교서한(note verbale)을 제출하였다. 2009년 3월 25일 제23차회기 대륙붕한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은 신청에 관한 프리젠테이션을 하였다. 2009년 9월 2일 유엔해양법협약 제2부속서 제5조와 대륙붕한계위원회 의사규칙(Rules of the Procedure of the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UN Doc. CLCS/40/Rev.1, 이하 ‘의사규칙’)에 따라서 소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대륙붕한계위원회 제24차회기, 제25차회기, 제26차회기, 제27차회기, 제28차 회기에서 소위원회는 일본이 제출한 정보문서에 대하여 검토를 수행하였다. 소위원회의 검토 기간 동안 일본 대표단은 질의 사항에 대한 응답, 불명확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관련된 부가정보를 제출하였다. 이후 2012년 4월 19일 권고안이 채택되었으며, 2012년 6월 30일 권고문 요약본이 유엔 해양법국<sup>5)</sup> 웹사이트 대륙붕한계위원회 페이지에 공개되었다.<sup>6)</sup>

### 3. 대륙붕한계위원회 권고의 내용 및 일본의 입장

2012년 4월 19일 대륙붕한계위원회는 일본이 제출한 대륙붕 한계 확정과 관련한 정보문서에 대해서 권고를 내렸다. 이 권고문은 유엔해양법협약 제2부속서 제6조 제3항에 따라 연안국 및 사무총장에게 제출된다. 대륙붕한계위원회 의사규칙, 부속서 III<sup>7)</sup> 제11.3항에 따르면 권고문 요약본에는 비밀에 관한 사항

5) The Division for Ocean Affairs and the Law of the Sea, DOALOS.

6) [http://www.un.org/Depts/los/clcs\\_new/submissions\\_files/jpn08/com\\_sumrec\\_jpn\\_fin.pdf](http://www.un.org/Depts/los/clcs_new/submissions_files/jpn08/com_sumrec_jpn_fin.pdf).

은 포함시킬 수 없지만, 대신 요약본은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서 2012년 6월 3일 대륙붕한계위원회는 일본에 대한 권고문 요약본을 대륙붕한계위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공개하였다. 권고문 발표 후 일본 외무성은 자신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2012년 4월 28일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 내용 중 중요한 것은 2항과 3항이다.

“2. 권고의 상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현재 자세하게 조사하고 있는 중이지만, 일본이 신청한 7개 해역 중에 6개 해역에 대한 권고가 나왔으며, 그 6개 해역중의 하나인 시코쿠 해분 해역에 대해서 ‘오키노도리시마’를 기점으로 한 우리나라의 대륙붕 연장이 인정받고 있다는 점을 평가한다.

3. 큐슈-팔라우해령 남부해역에 대한 권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미루어진 것은 안타깝지만 우리나라는 동 해역에 대한 권고가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생각이다.”<sup>8)</sup>

일본 외무성의 성명 중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시코쿠해분 해역에 대해서 ‘오키노도리시마’를 기점으로 한 일본의 대륙붕 연장이 인정받고 있다고 한 2항이다. 이러한 일본 외무성의 설명은 대륙붕한계위원회 의장성명<sup>9)</sup>과도 충돌되는 것이었다. 제29차회기 이후 대륙붕한계위원회 의장성명<sup>9)</sup> 제18항에서는 ‘큐슈-팔라우해령(오키노도리시마 기점) 남부해역에 대해서 제24차 회기에서 결정한 바대로 어떠한 권고도 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호 모순적인 일본 외무성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륙붕한계위원회 권고문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 Ⅲ. 대륙붕한계위원회 권고문 검토

#### 1. 개략

권고문 요약본<sup>10)</sup>은 전체 185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62페이지가 권

7) Modus operandi for the consideration of a submission made to the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8)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http://www.mofa.go.jp/mofaj/press/danwa/24/dga\\_0428.html](http://www.mofa.go.jp/mofaj/press/danwa/24/dga_0428.html).

9) UN Doc. CLCS/74, 30 April 2012.



고문 요약본의 내용이며, 나머지는 부속서이다. 부속서에는 ‘대륙사면의 끝 점’과 ‘대륙붕 한계 점’의 좌표점을 표시한 12개의 표가 첨부되어 있다. 일본이 문서를 제출한 7개 지역 중 1개 지역에서는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4개 지역에서는 심사결과 연장신청이 받아들여졌고, 2개 지역에 대해서는 심사결과 200해리 밖의 대륙붕 연장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하였다.

큐슈-팔라우해령(KPR) 지역에 대해서는 오키노도리시마에 관한 문제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진 곳은 다음의 4개 지역이다. 미나미로토섬(MIT) 해역, 오가사와라대지(OGP) 해역, 남부 오키다이트해령(ODR) 해역, 시코쿠해분(SKB) 해역에 대해서는 연장 신청을 받아들여 대륙붕 한계 확장과 관련된 신청에 대해서 위원회가 권고를 내렸다. 연장 신청을 심사한 결과 연장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곳은 2개 지역이었다. 위원회는 미나미도리시마섬(MTS) 해역, 모기해산(MGS) 해역에 대해서는 일본이 제출한 ‘대륙사면의 끝(FOS)’ 점이 협약 제76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장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대륙붕의 한계 확장을 신청한 7개의 해역 중에서 오키노도리시마와 관련된 것은 큐슈-팔라우해령(KPR) 지역과 시코쿠해분(SKB) 지역이다. 큐슈-팔라우해령(KPR) 지역은 오키노도리시마를 기점으로 대륙붕 한계 확장을 신청한 해역이다. 일본은 시코쿠해분(SKB) 지역 역시 오키노도리시마를 기점으로 하여 200해리 밖의 대륙붕 한계 확장이 신청된 해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코쿠해분 해역에서의 대륙붕 연장은 이주오가사와라 열도(Izu-Ogasawara Arc)에서 연장된 동쪽 부분과 다이토대지(Daito Ridge) 및 큐슈-팔라우 해령(Kyushu-Palau Ridge)에서 연장된 서쪽 부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12년 4월 28일 일본 외무성 성명은 시코쿠해분 해역의 대륙붕 확장이 오키노도리시마에서 연장된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보다 유의미한 부분은 오키노도리시마가 200해리 ‘이내의’ 대륙붕을 갖는다는 판단 위에서 시코쿠해분 지역의 대륙붕 한계 확장 심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

10) CLCS, *op. cit.*

<그림 2> 시코쿠해분해역의 대륙붕 연장 신청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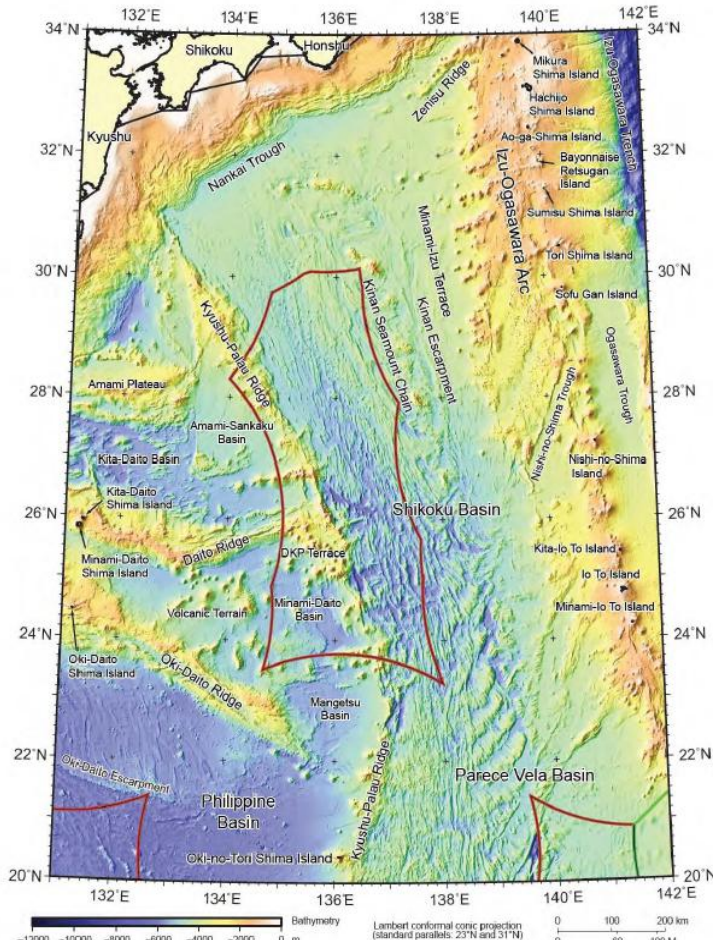


Figure 21. Overview bathymetric map of the Shikoku Basin Region as originally submitted by Japan. (Fig. 2.1. of SKB-MB-DOC-01).

출처 : 일본에 대한 대륙붕한계위원회 권고 요약본, 54쪽11)

## 2. 오키노도리시마에 대한 판단 부분

큐슈-팔라우해령(KPR)에서 오키노도리시마를 기점으로 한 대륙붕 한계 확장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키노도리시마를 기점으로 한 한계 확장 신

11) *Ibid.*, p. 54.

청을 한 곳은 큐슈-팔라우해령(KPR) 지역이다. 이 해역은 오키노토리시마를 중심으로 동심원으로 200해리의 반지름을 갖는 해역이다. 대륙붕한계위원회는 오키노토리시마가 대륙붕을 가질 수 있는 섬이 아니며 일본이 주장하는 대륙붕 지역은 심해저로서 인류의 공동유산에 해당하는 영역이라는 대한민국과 중국의 항의 외교서한의 지적을 권고문에 적시하였다.<sup>12)</sup> 이에 따라 대륙붕한계위원회는 이러한 ‘분쟁’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큐슈-팔라우해령(KPR)에 대한 권고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였다.<sup>13)</sup>

일본은 시코쿠해분(SKB) 지역의 대륙붕 한계 확장을 신청할 때에도 그 해역이 오키노토리시마의 연장이라고 주장하였다<sup>14)</sup> 이주오가사와라 열도(Izu-Ogasawara Arc)에서 연장된 시코쿠해분 해역 동쪽 부분에서 일본은 대륙붕 연장의 기준이 되는 육지영토로 오키노토리시마를 언급하지는 않았다.<sup>15)</sup> 시코쿠해분 해역 서쪽 부분에 대한 한계 확장 ‘신청 시’ 일본은 대륙붕 연장의 기준이 되는 육지영토로 다이토대지(Daito Ridge)에 위치한 키타다이토시마(Kita-Daito Shima)와 미나미-다이토 시마, 오키다이토대지(Ok-Daito Ridge)에 위치한 오키다이토시마(Ok-Daito Shima) 그리고 마지막으로 큐슈-팔라우해령(Kyushu-Palau Ridge)에 위치한 ‘오키노토리시마(Ok-no-Tori Shima)’를 언급하였다. 하지만 시코쿠해분 지역의 대륙붕 시작점 중 하나가 오키노토리시마라는 일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대륙붕한계위원회는 시코쿠해분 지역에 대해서 대륙붕 한계 확정을 위하여 ‘대륙사면의 끝(FOS)’ 점 18개를 인정하여 주었다. 하지만 대륙붕한계위원회 권고문은 시코쿠해분(SKB) 지역에서 대륙붕 한계 확장 사용된 18개의 대륙사면의 끝(FOS) 점들이 어느 육지 부분으로부터 유래하는지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며 따라서 대륙사면의 끝(FOS) 점이 오키노토리시마에서 유래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지도 않았다. 다만 대륙사면의 끝(FOS) 점들이 큐슈-팔라우해령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만을 적시하였다.<sup>16)</sup> 일본 본섬으로부터 뻗어져 나온 큐

12) *Ibid.*, paras. 15-19.

13) *Ibid.*, para. 20.

14) *Ibid.*, paras. 3, 158.

15) 토리시마섬(Tori-shima Island)과 같은 시키토로-토 대지(Shichito-lo To Ridge)에 위치한 섬들을 주장하였다.

16) 단, SKB-FOS-213은 오키다이토대지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하였다. CLCS, 각주 3)의 문서, para. 167.

슈-팔라우 해령 내에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전체 권고문의 취지상 대륙붕한계위원회는 대륙사면의 끝(FOS) 점을 일본 본섬의 연장 부분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더 타당한 해석인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이 대륙붕 한계 신청시에 대륙사면의 끝(FOS) 점이 오키노도리시마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명시한 것과 비견되게 대륙붕한계위원회 권고문 요약본은 대륙사면의 끝(FOS) 점이 큐슈-팔라우해령에 위치하고 있다고만 하였는데, 이러한 점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일본은 대륙사면의 끝 점이 오키노도리시마의 연장 부분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상세한 내용은 후술). 2012년 4월 28일 일본 외무성 성명에서 시코쿠해분 해역에서 오키노도리시마를 기점으로 한 대륙붕 연장이 인정받았다는 주장은 이러한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3. 200해리 이내 대륙붕 문제

대륙붕한계위원회는 오키노도리시마를 기점으로 한 200해리 이내 대륙붕의 존재에 대해서는 그 진위 여부와 관련하여서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았다. 200해리 이내 대륙붕이 존재하고 있는지 여부, 해당 섬이 200해리 대륙붕을 가질 수 있는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상의 섬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즉, 오키노도리시마가 200해리 대륙붕을 가질 수 있는 섬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않았다.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와 제2부속서에 따라서 200해리 밖으로 대륙붕 한계 확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즉, 아래 (i)와 (ii)의 선이 200해리 밖에 존재하는 경우 대륙붕은 다음의 선 중 어느 하나까지 확장될 수 있다(협약 제76조 제4항 (a))

(i) 퇴적암의 두께가 그 가장 바깥 고정점으로부터 대륙사면의 끝까지를 연결한 가장 가까운 거리의 최소한 1퍼센트인 가장 바깥 고정점(이하 '1퍼센트 고정점')을 제7항에 따라 연결한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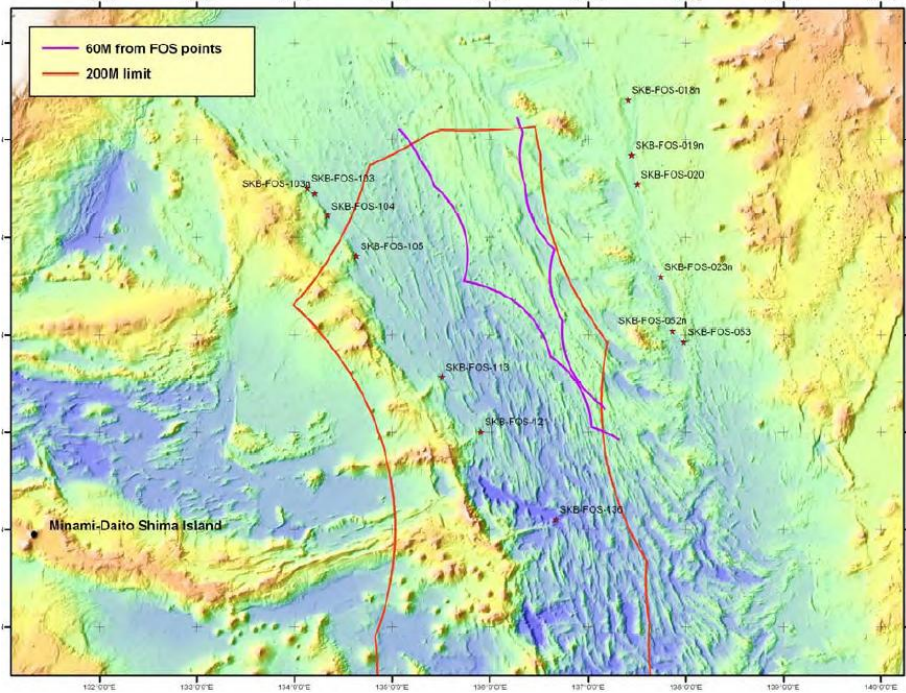
(ii) 대륙사면의 끝으로부터 60해리를 넘지 아니하는 고정점(이하 '60해리 고정점')을 제7항에 따라 연결한 선<sup>17)</sup>

다만 이 경우에도 이 고정점은 영해기선으로부터 350해리를 넘거나 2500미

17)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 제4항(a) 참조.

터 수심을 연결하는 선인 2500미터 등심선으로부터 100해리를 넘을 수 없다(협약 제76조 제5항). 대륙붕의 바깥 한계는 이 고정점을 연결하는 60해리를 넘지 않는 직선으로 이루어진다(제76조 제7항). 이 과정에서 대륙붕한계위원회는 ‘1퍼센트 고정점’을 선정하거나 혹은 ‘60해리 고정점’ 및 그 고정점의 기초가 되는 ‘대륙사면의 끝(FOS) 점’을 선정하는데 그 역량을 집중한다. 보통 ‘1퍼센트 고정점’ 보다는 ‘60해리 고정점’이 대륙붕 한계 확장 시 많이 사용된다.

<그림 3> 60해리 고정점으로 의미를 갖는 12개 FOS(동쪽 지역 5개 + 서쪽 지역 7개, ☆표시)



출처 : 일본에 대한 대륙붕한계위원회 권고 요약본,<sup>18)</sup> 6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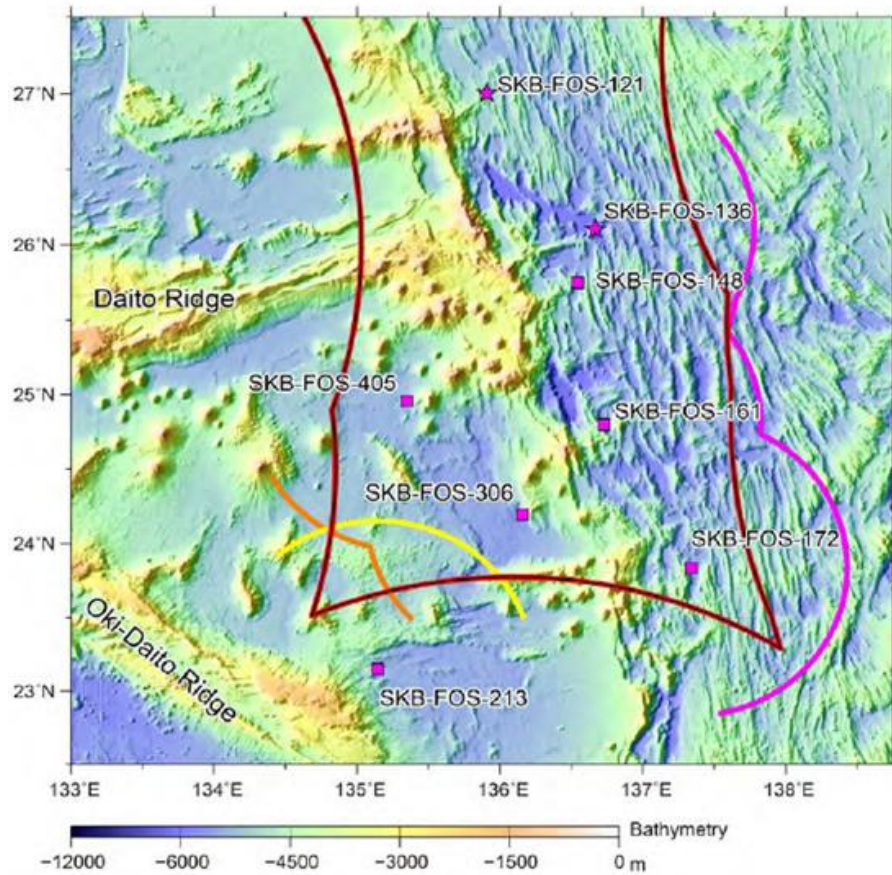
시코쿠해분(SKB) 해역에서 대륙붕한계위원회는 총 18개의 대륙사면의 끝(FOS) 점을 인정하였다. 시코쿠해분 해역 동쪽 지역에서는 5개의 대륙사면의 끝(FOS) 점을 인정하였다. 시코쿠해분 해역 서쪽 지역에서 인정된 나머지 13

18) *Ibid.*, p. 60.



개 중에서 대륙사면의 끝(FOS)을 토대로 '60해리 고정점'을 확정된 것은 7개이며, 나머지 6개는 대륙사면의 끝(FOS) 점이라는 의미만을 가질 뿐 이를 기초로 하여 '60해리 고정점'을 확정하지는 않았다.<sup>19)</sup>

<그림 5> 60해리 고정점으로 의미를 갖지 못한 6개의 점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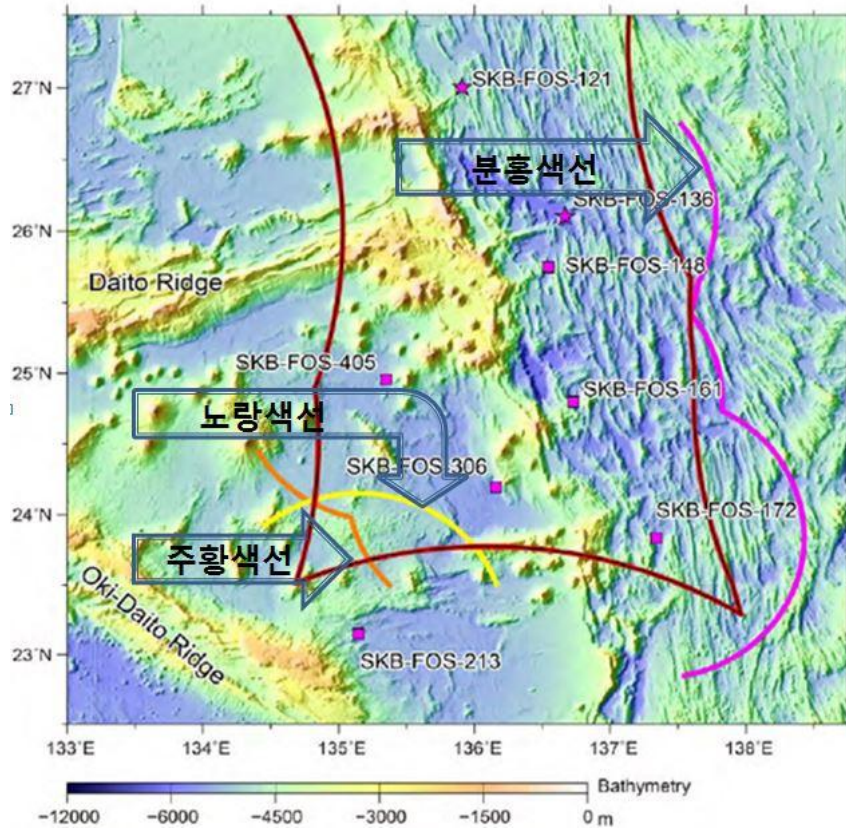


출처 : 일본에 대한 대륙붕한계위원회 권고 요약본<sup>20)</sup>, 59쪽

19) CLCS, *op. cit.*, Table 12 참조.

20) *Ibid.*, p. 59.

<그림 6> 60해리 고정점으로 의미를 갖지 못 한 6개의 점 (■ 표시) -  
 흑백그림을 위한 편집본<sup>21)</sup>



출처 : 일본에 대한 대륙붕한계위원회 권고 요약본<sup>22)</sup>, 59쪽

‘60해리 고정점’을 갖지 못 한 6개의 대륙사면의 끝 점은 다음과 같다.

- i) SKB-FOS-148
- ii) SKB-FOS-161
- iii) SKB-FOS-172
- iv) SKB-FOS-213

21) 논문 발간에 있어서 칼라 출판을 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편집을 한 지도를 첨부한다.

22) *Ibid.*, p. 59.

v) SKB-FOS-306

vi) SKB-FOS-405

이 점들은 60해리를 연장할 경우 대륙붕의 한계가 다른 기점을 통하여 생성된 200해리 대륙붕이나 그 연장에 포함되므로 굳이 그 60해리 고정점을 표시할 필요가 없는 경우이다. i) SKB-FOS-148, ii) SKB-FOS-161, iii) SKB-FOS-172는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뺀어져 나온 200해리 대륙붕에 그 한계점이 포함되므로 60해리 고정점을 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이다(그림 4의 분홍색 선 참조). iv) SKB-FOS-213, v) SKB-FOS-306, vi) SKB-FOS-405는 상호 그 연장점이 겹쳐지는 경우이거나 미나미다이토시마 섬, 오키다이토시마 섬에서 뺀쳐져 나온 200해리 대륙붕에 그 한계점이 포함되는 경우이다(그림 4의 노란색, 주황색 선 참조).

문제는 iii) SKB-FOS-172, iv) SKB-FOS-213, v) SKB-FOS-306의 60해리 고정점은 오키노도리시마를 기점으로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대륙붕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대륙사면의 끝(FOS) 점 iii) SKB-FOS-172, iv) SKB-FOS-213, v) SKB-FOS-306의 '60해리 고정점'을 확정하지 않은 것은 오키노도리시마가 200해리의 대륙붕을 갖는다는 전제에서 심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상황이다. 오키노도리시마가 섬이 아니므로 200해리 대륙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심사를 했다면 대륙사면의 끝(FOS) 점 iii) SKB-FOS-172, iv) SKB-FOS-213, v) SKB-FOS-306을 기준으로 60해리 고정점이 정해져야 한다. 하지만 대륙붕한계위원회는 대륙사면의 끝(FOS) 점 iii) SKB-FOS-172, iv) SKB-FOS-213, v) SKB-FOS-306을 기준으로 60해리 고정점을 확정하지 않았다.<sup>23)</sup>

#### IV. 권고문에 대한 일본의 입장 분석 및 평가

대륙붕한계위원회 권고문 요약본을 기준으로 오키노도리시마에 대해서 대륙붕한계위원회가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오키노도리시마 기점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는 일본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는지 비판적으로

---

23) *Ibid.*, Table 12 참조.



로 검토한다.

## 1. 권고문의 기본 취지

큐슈-팔라우해령 해역에서 오키노도리시마를 기점으로 한 일본의 대륙붕 연장 신청은 명백히 거부되었다. 오키노도리시마를 기점으로 대륙붕 연장에 관한 심사에 있어서 대륙붕한계위원회는 큐슈-팔라우해령 해역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대륙붕한계위원회는 유엔해양법협약 상 오키노도리시마의 법적 지위가 대륙붕이나 배타적경제수역을 가질 수 있는 섬인지 여부에 대해서 중국 및 우리나라와 일본이 입장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대륙붕한계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오키노도리시마와 관련된 대륙붕 한계 확장 심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오키노도리시마를 기점으로 한 대륙붕 확장 신청에 대해서 대륙붕한계위원회가 심사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은 정치적으로는 오키노도리시마를 유엔해양법협약상 섬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일본의 법적 지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대륙붕한계위원회는 한국과 중국이 각각의 외교서한에서 제기한 문제가 해결이 되기 전에는 큐슈-팔라우해령 지역에 대한 권고와 관련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명시하였다. 권고문 요약본 제20항은 다음과 같다.

“대륙붕한계위원회는 외교서한에 제기된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위원회가 남부 큐슈-팔라우 해령 지역에 대해서 권고를 취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다고 본다.”<sup>24)</sup>

이 권고문 요약본의 표현상으로는 오키노도리시마가 섬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한국 및 중국과 일본 사이에 “분쟁(dispute)”이 있다고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중국과 한국은 외교서한을 통해서 “분쟁”의 존재를 적극 주장했지만 대륙붕한계위원회가 이를 명시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다만, “외교서한에 제기된 문제(the matters referred to in the notes verbales)”라고만 하

24) 원문

“The Commission considers that it will not be in a position to take action to make recommendations on the Southern Kyushu-Palau Ridge Region(KPR) until such time as the matters referred to in the notes verbales have been resolved.” *Ibid.*, para. 20.

여 중국과 한국이 “분쟁”의 존재를 주장한 외교서한을 언급만 했을 뿐이다.

## 2. 큐슈-팔라우 해령의 기점 불명시 문제

시코쿠해분 해역에서 대륙붕 확장 신청이 받아들여졌으며, 일본 외무성은 오키노도리시마가 대륙붕 한계 확장의 기점으로 인정받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대륙붕 한계 확장 신청 시에 일본은 시코쿠해분 해역 역시 오키노도리시마의 연장 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륙붕한계위원회는 권고문 요약본에 이러한 일본의 오키노도리시마 기점 주장 사실을 적시하였지만 대륙사면의 끝(FOS) 점이 오키노도리시마로부터 연장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일본 외무성은 2012년 4월 28일 성명을 통하여 시코쿠해분 해역에서 오키노도리시마를 기점으로 한 대륙붕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주장을 하였다. 큐슈-팔라우해령 해역에서 오키노도리시마를 기점으로 한 대륙붕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연기된 상황에서 일본 외무성의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오키노도리시마가 기점으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일본 외무성 성명이 그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주장을 발표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우선 큐슈-팔라우해령의 지리적 특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큐슈-팔라우해령은 일본 본토에서부터 이어지는 해령으로 시코쿠해분 해역을 가로지르지만 이 해령에 존재하는 섬은 오로지 오키노도리시마 밖에 없다. 대륙붕한계위원회가 시코쿠해분 해역 상의 대륙사면의 끝(FOS) 점의 기준이 되는 육지영토가 무엇인지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빌미로 일본은 이 대륙사면의 끝(FOS) 점이 오키노도리시마의 연장 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큐슈-팔라우해령’ 해역에서 오키노도리시마를 기점으로 한 대륙붕한계 확장에 대해서는 이를 심사하지 않은 대륙붕한계위원회 권고의 전체 취지상 ‘시코쿠해분’ 해역상의 대륙사면의 끝(FOS) 점이 오키노도리시마의 연장 부분이라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일본 본섬의 육지영토로부터 연장된 대륙사면의 끝(FOS) 점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대륙붕한계위원회 권고문 역시 이러한 전제에서 대륙사면의 끝 점의 위치를 심사한 것이다.

### 3. '60해리 고정점' 불확정 문제

다음으로 일본 외무성 성명은 시코쿠해분 해역에 대한 대륙붕 연장의 인정 방식에서 대륙붕한계위원회는 오키노도리시마 기점 200해리 이내 대륙붕의 존재에 대해서는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대륙붕한계위원회는 이 지역에서 인정한 18개의 대륙사면의 끝 점 중 6개의 점에 대해서 60해리 고정점을 확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200해리 대륙붕 내부에 이 연장점이 포함되어 버리거나 60해리 고정점을 연결한 선이 상호 중첩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륙사면의 끝 점 6개 중 3개는 (SKB-FOS-172, SKB-FOS-213, SKB-FOS-306) 60해리 고정점이 오키노도리시마를 기점으로 한 200해리 대륙붕 안에 존재한다. 따라서 시코쿠해분 해역의 대륙붕 확장에 관한 심사 과정에서 대륙붕한계위원회는 오키노도리시마 기점 200해리 대륙붕의 존재를 상정하고 대륙사면의 끝 점과 60해리 고정점에 관한 좌표점의 위치와 존재 여부를 심사하였다. 이러한 점 때문에 일본 외무성은 오키노도리시마를 기점으로 한 대륙붕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일본은 이러한 근거로 오키노도리시마 기점이 인정받았다고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추론된다. 하지만 이는 대륙붕한계위원회가 오키노도리시마를 기점으로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 상의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오키노도리시마 기점 200해리 대륙붕이나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해서 대륙붕한계위원회가 어떠한 심사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대륙붕한계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의 한계 때문이다. 대륙붕한계위원회는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며, 연안국이 신청한 대륙붕 한계 '확장'의 자연과학적 타당성에 대해서만 심사한다. '확장'의 타당성 여부만을 심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연안국이 200해리 대륙붕을 갖는지 여부에 대해서, 더 나아가 기점으로 주장하고 있는 섬이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을 향유할 수 있는 협약 제121조 제3항 상의 섬인지에 대해서도 심사할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일본이 오키노도리시마가 200해리 대륙붕을 가진다는 전제에서 심사를 요청해도 대륙붕한계위원회의 권한 상의 한계로 이 전제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할 수가 없다. 대륙사면의 끝 점 6개 중 3개(SKB-FOS-172, SKB-FOS-213, SKB-FOS-306)를 기준으로 하는 60해리 고정점들이 오키노도리시마 기점 200

해리 대륙붕에 포함된다는 가정에서 일본이 이 60해리 고정점들을 대륙붕한계 위원회에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정할 수 있는 권한이 대륙붕한계 위원회에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륙붕한계위원회 권한상의 한계를 빌미로 일본 외무성이 오키노도리시마를 기점으로 한 대륙붕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주장한 것은 권고문에 대한 아전인수 격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 오키노도리시마를 기점으로 한 대륙붕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논리를 펴기 위해서는 이를 기점으로 한 시코쿠 해분 해역의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져 이에 대한 심사가 개시되어야만 한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일본의 주장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 한다.

## V. 결 론

대륙붕한계위원회는 오키노도리시마가 200해리 대륙붕을 가질 수 있는 유엔 해양법협약 제121조 상의 섬이라는 점을 인정해 준 바 없다. 오키노도리시마가 200해리 대륙붕을 가진다는 전제에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오키노도리시마가 유엔해양법협약상 200해리 대륙붕을 가질 수 있는 섬이라는 것을 대륙붕한계위원회가 인정한 것은 아니다. 대륙붕한계위원회의 권고문이 밝힌 바와 같이 위원회의 권고는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 및 제2부속서와 관련된 문제만을 다루며 양국사이 경계획정 협약이나 다른 조약의 이행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다.<sup>25)</sup> 대륙붕한계위원회는 섬의 법적 지위에 관한 협약 제121조의 판단과 관련하여서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하며 오키노도리시마가 200해리 대륙붕이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이를 심사하여도 오키노도리시마의 법적 지위가 대륙붕을 가지는 섬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도 대륙붕한계위원회가 오키노도리시마를 기점으로 한 대륙붕 확장 신청 부분인 큐슈-팔라우해령 해역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오키노도리시마가 대륙붕을 가질 수 있는 섬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심사하지 않겠다는 대륙붕한계위원회의 명백한 의사 표현이라고 할 수 있

25) *Ibid.*, para. 13.

다. 큐슈-팔라우해령에서 대륙붕한계위원회는 오키노도리시마를 기점으로 한 대륙붕 확장에 대한 판단을 연기하였다. 이러한 큐슈-팔라우해령 해역에서 표명된 대륙붕한계위원회의 명백한 의사와 모순되게 오키노도리시마가 대륙붕을 가질 수 있다는 판단을 동일한 권고문에서 대륙붕한계위원회가 내렸다는 것은 사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시코쿠 해분 해역에 대해서 ‘오키노도리시마’를 기점으로 한 우리나라(일본)의 대륙붕 연장이 인정받고 있다”는 2012년 4월 28일 일본 외무성 성명은 이를 뒷받침할만한 법적 타당성이 전혀 없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것이다. 기술적 문제에 대한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고 있을 뿐인 대륙붕한계위원회 권고문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근거와 타당성이 없는 해석을 통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한 것이다. 일본이 시코쿠해분해역의 200해리 대륙붕 연장 심사 과정에서 오키노도리시마를 기점으로 한 200해리 대륙붕의 존재를 전제로 심사가 이루어졌다는 점 때문에 오키노도리시마를 기점으로 한 200해리 대륙붕의 존재가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의하여 인정받았다고 주장하려 한다면 이는 대륙붕한계위원회가 기술적 사실에 대한 평가를 하는 기관이라는 인식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큐슈-팔라우해령 해역과 시코쿠해분 해역에 대한 대륙붕한계위원회의 입장을 대륙붕한계위원회 권한 상의 한계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위원회 자신은 오키노도리시마가 대륙붕을 가지는 섬인지 여부와 대륙붕한계위원회와 대륙붕 한계 확장 심사를 하는 것은 무관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오키노도리시마가 자체 대륙붕을 가질 수 있는 섬인지와 관련하여 관련국인 중국·한국과 일본 사이 입장이 다른 상황에서 대륙붕의 확장 여부에 대해서 심사할 수 없다는 것이 위원회의 기본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오키노도리시마’를 기점으로 한 일본의 대륙붕 연장이 인정받았다고 주장한 2012년 4월 28일자 외무성 성명은 그 근거가 없는 것이다. 또한 대륙붕한계위원회에서 오키노도리시마를 기점으로 한 200해리 대륙붕의 존재가 인정받았다는 일본 주장도 근거가 없는 것이다.

다만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항은 대륙붕한계위원회가 오키노도리시마가 섬인지와 관련하여서 한국과 중국, 일본 사이에서 “분쟁”이 존재한다고 명시적으로 확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다만, 권고문은 “분쟁”의 존재를 명시한 한국과 중국의 “외교서한”만을 언급하였고, 이 서한이 제기한 “문제”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대륙붕한계위원회의 입장이 오키노도리시마와 관련한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사이의 “분쟁”의 존재를 확인한 것인지 애매모호한 상황이다. 만약 “분쟁”의 존재가 인정될 경우 대륙붕한계위원회 의사규칙(Rules of Procedure of the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에 따라<sup>26)</sup> 대륙붕한계위원회는 관련 대륙붕 한계 확장 신청에 대해서 심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분쟁의 관련 국가들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만 이에 대해서 심사할 수 있다.<sup>27)</sup> 오키노토리시마가 협약 제121조 상의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가질 수 있는 섬인지와 관련하여 한국과 중국은 일본과 사이에서 “분쟁”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음에도, 대륙붕한계위원회는 “분쟁”의 존재를 명시적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다. 만약 “분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면 대륙붕한계위원회가 한국과 중국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원회 자체 결정만으로 오키노토리시마를 중심으로 한 큐슈-팔라우해령 남부지역의 대륙붕 연장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반면 “분쟁”의 존재를 언급한 한국과 중국의 “외교서한”을 명시적으로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 강조점을 두면, 분쟁의 존재를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한 것이며 따라서 한국과 중국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생기게 된다. 일본이 2012년 4월 28일 외무성 성명 제3항에 따라 큐슈-팔라우해령 남부해역에 대한 권고를 재추진하게 될 경우 대륙붕한계위원회가 “분쟁”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 參考文獻

### I. 국내문헌

김대순, 「국제법론」 제17판, 삼영사, 2013

김영구, 「한국과 바다의 국제법」, 21세기 북스, 2004

김현수, 「해양법각론」, 청목출판사, 2001

김현수, 「국제해양법」, 현경문화사, 2007

26) 의사규칙 부속서, Annex I, Submissions in case of a dispute between States with opposite or adjacent coasts or in other cases of unresolved land or maritime disputes

27) 부속서 I, 제5항(a).

- 김현수, 「해양법각론」, 청목출판사, 2001  
박찬호·김한택, 「국제해양법」, 지인북스, 2009  
외교통상부 조약국 편, 「동북아 해양법령과 유엔해양법협약집」, 일조각, 2006

## II. 외국문헌

### 1. 외국 단행본

- Ahnish, F. A., *The International Law of Maritime Boundaries and the practice of States in the Mediterranean Sea*, Oxford : Clarendon Press, 1993  
Attard, David Joseph, *The Exclusive Economic Zone in International Law*, Oxford : Oxford Univ. Press, 1987  
Ando, N. & et. al. (eds.), *Lieber Amicorum Judge Shigeru Oda*, The Hague : Kluwer, 2002  
Cook, Peter & Carleton, Chris (eds.), *Continental Shelf Limits, The Scientific and Legal Interface*, Oxford : Oxford Univ. Press, 2000  
Nandan, Satya & Rosenne, Shabtai,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A Commentary*. Commentary, Vol. II. Dordrecht, Boston, London : Martinus Nijhoff Publisher, 1993  
Suarez, Suzette V., *The Outer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 Legal Aspects of their Establishment*, Springer, 2010

### 2. 외국 논문

- L. D. M. Nelson, "The Continental Shelf: Interplay of Law and Science", in N Ando & et. al. (eds.) *Lieber Amicorum Judge Shigeru Oda*, The Hague : Kluwer, 2002  
R. W. Smith & G. Taft, "Legal Aspects of the Continental Shelf", in Peter Cook & Chris Carleton (eds.) *Continental Shelf Limits, The Scientific and Legal Interface*, Oxford : Oxford Univ. Press, 2000  
Michael Sheng-ti Gau, "The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as a Mechanism to Prevent Encroachment upon the Area",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0, No. 1, 2011

3. 이의 국제문서

CLCS, Summary of Recommendation of the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in regard to the Submission made by Japan on 12 November 2008

CLCS, Rules of the Procedure of the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UN Doc. CLCS/40/Rev.1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Legal Issues of the Outer Continental Shelf, Berlin Conference* (2004)

**[주제어]** 오키노토리시마, 대륙붕한계위원회, 대륙붕 연장 신청, 일본 외무성 성명, 권고, 유엔해양법협약, 해양법

**[Key Words]** Okinotorishima,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submission for the prolong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a statement of the Japan Foreign Affairs, Recommendation, UNCLOS, Law of the Sea

[논문접수일] 2015.02.06

[논문심사일] 2015.03.05

[논문채택일] 2015.03.13